#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24 발의연월일: 2021. 7. 23.

발 의 자:김도읍·서병수·권명호

추경호 · 이헌승 · 임이자

전주혜 · 조명희 · 홍준표

김정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33㎡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는 소화기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경로당, 어린이집 등 일부시설에는 소화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음. 이에 따라 화재 대응에 취약한 노인, 영유아 등이 오히려 화재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화재 발생 시 인명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노인,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유지 ·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 신설 등).

##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및 제4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"제1항"을 각각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노유자(老幼者)시설의 관계인은 소화기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화재안전기준이"를 "화재안전기준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노유자(老幼者)시설"을 "노유자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및 노유자시설"로 한다.

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"제9조제2항"을 "제9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47조의3제1항제1호 중 "제9조제1항"을 "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 2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9조제3항"을 "제9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 중 "제9조제3항"을 "제9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48조의2제1호 중 "제9조제2항"을 "제9조제3항"으로 한다. 제53조제1항제1호 중 "전단"을 "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소화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
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은
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	제9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
는 소방시설의 유지・관리 등)	는 소방시설의 유지・관리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
	노유자(老幼者)시설의 관계인은
	소화기를 소방청장이 정하여
	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
	설치 또는 유지・관리하여야
	<u>한다.</u>
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	<u>③</u>
<u>제1항</u> 에 따른 소방시설이 <u>제1</u>	<u>제1항 및 제2항제1</u>
<u>항</u> 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	<u>항 및 제2항</u>
치 또는 유지・관리되어 있지	
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	
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	
조치를 명할 수 있다.	
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	<u>4</u>
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	제1항 및 제2항
•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	
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	
폐쇄(잠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	
다)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	
는 아니 된다. 다만, 소방시설	

의 점검·정비를 위한 폐쇄· 차단은 할 수 있다.

제11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 저 례)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 (건축물의 신축·개축·재축· 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 대상물을 포함한다)의 소방시 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 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 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 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<u>노유자(老幼者)시설</u>,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- ② ~ ⑤ (생 략) 제47조의2(조치명령 등의 기간연 저 장)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

세11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
례) ①
화재안전기준이나
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
기준이
· 
1.·2. (현행과 같음)
3. 노유자시설에 설치하여야 하
<u>는 소화기 및 노유자시설</u>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세47조의2(조치명령 등의 기간연 작) ①
Λ·ΓΙ (Ι)

치명령·선임명령 또는 이행명 령(이하 "조치명령 등"이라 한 다)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 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 령한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 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 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<u>제9조제2항</u>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
- 3. ~ 8. (생략)
- ② (생 략)

제47조의3(위반행위의 신고 및 저 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누구든 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.

1. <u>제9조제1항</u>을 위반하여 소방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·관리 한 자
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. 제9조제3항
3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세47조의3(위반행위의 신고 및
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
· 1.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
<u> 2항</u>

- 2. <u>제9조제3항</u>을 위반하여 폐쇄·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
- 3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제48조(벌칙) ①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 ·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# ② (생략)

- 제48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5조제1항 · 제2항, <u>제9조제</u> 2항, 제10조제2항, 제10조의2 제3항, 제12조제2항, 제20조제 12항, 제20조제13항, 제36조제 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위반한 자

### 2. ~ 7. (생략)

제5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<u>제9조제4항</u>
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8조(벌칙) ① <u>제9조제4항</u>
<u>.</u>
· ② (현행과 같음)
제48조의2(벌칙)
 1제9조제
<u> 3항</u>
 2. ~ 7. (현행과 같음)
2. ~ 7. (현행과 같음)
2. ~ 7. (현행과 같음) 제53조(과태료) ①

- 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<u>조 제2항</u>-----설치 또는 유지・관리한 자 2. • 3. (생략) ② ~ ④ (생 략)
- 1. 제9조제1항 <u>전단</u>의 화재안전 1. -----<u>전단 또는 같은</u> 2. • 3. (현행과 같음)

  - ② ~ ④(현행과 같음)